

2006. 11.

# 條例案件審查報告書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產業建設委員會

#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자연재해위험 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006. 11. 3	2006. 11. 6	2006. 11. 8	2006. 11. 8	재난안전 관리과장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하수시설 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위임된 내용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나.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요금체계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 (안 제4조)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행위 (안 제7조)
- 봉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 토지형질변경 제한행위 (안 제8조)

#### **나.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하수도 요금의 인상 (톤당 267원 → 348원으로 인상)
- 요금 누진체계 개편 (기본요금제 폐지, 사용단계 축소) (안 별표 1, 별표 1-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사용료 일부 감면 (3톤) (안 제19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우리시 관내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2개소 지정되어 있음  
장성리 일원과 산척면 둔대마을로서 2개지구 모두 침수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1.07㎢이 면적에, 60세대 16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 2개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가옥침수 55동, 이재민 53세대, 농경지 802ha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보았음
- 본 조례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자연재해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규제하지만 재해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방지대책을 세운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 바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 됨

### 나.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는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와 관련된 조례

-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거 독립경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수도사업 재정은 지금까지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존하여 온 바 전체 재정의 16% 정도만을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하고 있고 하수처리 원가의 46%만을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하는 실정임

하수처리 원가는 작년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올해에는 면단위 하수처리장인 이류, 앙성, 능암, 동량 4곳이 준공으로 하수처리원가가 높아지고 있음

-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 의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3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용 하수도요금부과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었음  
또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단계별로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였고,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변경하였음
-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요금을 인상하다고 하더라도 원가대비 현실화율은 60%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지금까지 하수도사업의 재정으로 받아온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률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면 노후관과 소규모의 하수도 건설 사업에 투입될 재원이 항상 부족하였고

금번의 하수도요금 인상분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각종 소규모 사업과 노후관거 개선사업에 쓰이게 될 것임

-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있으나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인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5. 질의답변 요지

### 가.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 질의 : 주민의 피해를 대비한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나, 2개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재해시 이주대책이나 가옥보호대책은

- 답변 : 자연재해 발생시 행동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음

### 나.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질의 : 하수도 요금을 30% 인상 하더라도, 올해 면지역의 4곳 처리장이 완공되면 다시 하수원가가 상승할 것 아니겠는지? 내년가서 또 올릴 것인지?

- 답변 : 사실 내년말에 정산을 해보면 이번 인상분을 반영하여도 원가의 60%가 안될 것 같음

▶ 질의 : 인상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인상을 너무 높은 것 아닌지?

○답변 : 인정 함. 사실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  
내년이면 적자폭이 더욱 누적됨

## 6. 심사결과

- 가.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나.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